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임 중 국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동 조례는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 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도시 정책 심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며, 선도적 스마트도시 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-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에 상위 법령의 구체적 명시 (안 제1조), 준용규정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을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변경(안 제2조, 안 제5조, 안 제11조), 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인원의 증원·격상, 위원장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위상 강화

(안 제7조, 안제8조),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·운영 및 제공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(안 제12조제2항), 스마트도시 시범지구 지정 조항 신설(안 제13조의2), 효과적인 국제 부담금 지원·집행,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국 운영 지원에 따른 관리 감독 체계 마련(안 제17조) 등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